##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52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김병기·문진석·박홍배

김 윤•박상혁•윤종군

박 정·장경태·한병도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의장은 정부에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 도에 야합하여 국회의원과 보좌진,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불법 계엄 에 조력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입법부인 국회의 경호를 행정부인 경찰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유지되는 경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한 계엄 시도가 자행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됨.

이에 국회에 적정한 무장을 한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여 국회를 찬 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 임(안 제144조).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 제목 "(경위와 경찰관)"을 "(국회경비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의 "경위(警衛)"를 "국회경비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를 "국회경비대는 총기 등 적정한 무장을 하고 국회 내·외부를 경호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	제144조(국회경비대) ①
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u>경위</u>	<u>국</u>
(警衛)를 둔다.	<u>회경비대</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③
받아 수행하되, <u>경위는 회의장</u>	, 국회경비대는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	총기 등 적정한 무장을 하고
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 내·외부를 경호한다.